

서울신학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장학금지급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본 평생교육원(이하“본원”이라한다) 운영규정에 규정된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장학생의 선발

제2조 (자격) 본 원의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는 학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① 장학생을 선발하는 학기에 수강신청 등록한 학생
- ② 청강생이 아닌 정규학기 학생
- ③ 품행 및 신앙생활에 결격이 없는 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성적장학금은 직전학기 5과목이상 이수, 평균 90점이상 취득하고, F성적이 없는 자(단, 성적이의신청기간 이후에 정정된 성적 및 계절학기 성적은 적용하지 않는다.)
 2. 그 외 장학금 수혜 대상자는 F성적이 없는 자 이어야 한다.
 3. 보훈장학금은 1, 2학기 정규학기에만 지급되며 기타사항은 보훈처 관련규정에 따른다.
 4. 장학종류에 따른 세부자격조건은 별도지침에 따른다.

제3조 (선발) 장학생의 선발 및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학업 성적
2. 학교생활(품행 및 협동정신)
3. 경제 사정
4. 신앙

제4조 (장학금신청) 본원의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 양식에 의하여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장학금 신청기간 및 방법은 매 학기 교학과에서 공고한다.

- ① 입학 및 학기 성적우수 장학생은 해당학기 성적에 따라 선발한다.

제5조 (명단공고) 확정된 장학생의 명단은 발표하거나 게시하여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장 장학금의 종류와 지급

제6조 (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액) 장학금의 종류, 지급기준은 세부지침사항으로 정한다.

제7조 (장학금의 재원) 본 대학교 장학금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① 평생교육원 재원
- ② 외부로부터의 장학금 및 기부금

제8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아래의 원칙에 따라 지급한다.

- ① 수강료를 완납한 후에 장학금을 현금(계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수강료에서 차감을 원할 시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등록이나 수강신청 변경으로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와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수령하였음이 드러났을 때에는 지급한 장학금 전액을 회수한다.
- ③ 모든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 지급은 하지 아니한다.
- ④ 모든 장학금은 해당 본학기에 한하여 지급하며, 수혜 예정자가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지급한다.
- ⑤ 콘서바토리는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한다.
 1. 1, 2학기 신입생 중 최우수 입학자에게는 소정의 입학장학금을 지급한다.
 2. 각 학년 학기별 전공실기 최우수자에게는 세부지침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며, 실기 동점자가 있을 경우 이론과목 성적우수자, 취득학점 고학점, 연장자순으로 지급한다.
 3. 전공실기 장학 대상자는 해당학기 외부 수강과목 포함하여 F과목이 없어야 한다.
 4. 콘서바토리 외부장학금은 디렉터의 추천, 원장의 결재로 지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하며, 제8조 ⑤항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 ② (지침의 개폐)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폐한다.